

제주지방법원 2020. 4. 27 선고 2019가단6477 판결 [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]

전 문

원고A

소송대리인 B

피고1. C

2. D

3. E

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현영두

변론 종결2020. 3. 23.

판결 선고2020. 4. 27.

주 문

1.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.
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피고 D, E은 피고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(이하 '이 사건 토지'라 한다)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2006. 4. 3. 접수 제2701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(이하 '이 사건 제1 등기'라 한다)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피고 C은 F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1979. 11. 26. 접수 제 48725호로 마친

소유권이전등기(이하 '이 사건 제2 등기'라 한다)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이 유

1. 기초사실

가. 등기관계

- (1)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37. 3. 15. F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었다.
- (2) 피고 C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79. 11. 26.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(법률 제3094호)에 의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 사건 제1 등기를 마쳤다.
- (3) 피고 D, E은 이 사건 토지 중 각 1/2 지분에 관하여 2006. 4. 3.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 사건 제2 등기를 마쳤다.

나. F과 원고, 피고들의 관계

- (1) F은 4.3 사건 당시인 1948. 12. 12.(음력)(양력 1949. 1. 10.) 사망하였고, F의 장남 G도 같은 날 사망하였다. F의 처는 H(1972. 3. 14. 사망함)이다. F과 H는 그 외에 차남 I, 삼남 J(역시 4.3 사건 당시 사망함)과 딸 4명을 두고 있었다.
 - (2) G의 처는 K(4.3 사건 당시인 1949. 1. 13. 사망함)이고, G의 자녀는 딸들인 원고와 L(4.3 사건 당시 사망함)가 있다.
 - (3) 피고 C은 I의 후처이고 1978년 혼인신고를 한 바 있다. I의 자녀 중 1명이 피고 E(모 M)이며, 피고 D은 피고 E의 남편이다.
 - (4) 제주지방법원(2019드단685호)이 2019. 8. 13.에 선고한 판결에 의하여, G와 N(I과 피고 C 사이의 아들) 사이에 1972. 9. 25. 제주시장에게 신고하여 한 입양은 무효임이 확인되었다.
- 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, 2, 3, 4, 6, 7, 8호증(가지번호 포함)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주장

가. 원고의 주장

① 원고는 H로부터 상속받은 상속인이다.

② F은 사망하여 1971년 피고 C 사이의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므로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피고 C 명의의 이 사건 제1 등기는 원인무효이므로 말소되어야 한다. 또한 H가 피고 C에게 이 사건 토지를 증여하지 않았고, 피고 C은 증여세 납부증명을 제출하지 않으므로 역시 피고 C 명의의 이 사건 제2 등기는 원인무효로서 말소되어야 한다.

③ 나아가 피고 D, E 명의의 이 사건 제2 등기는 무효인 피고 C 명의의 이 사건 제1 등기에 기하여 마쳐진 등기이므로, 역시 원인무효로서 말소되어야 한다.

나. 피고 C의 주장

①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가 아니므로 말소등기를 청구할 권원이 없다.

② H가 1972. 3. 13. 피고 C에게 증여하였다. 이러한 H의 증여의 의사에 따라 이 사건 제1 등기가 마쳐진 것이므로 이 사건 제1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여 유효하다.

3. 판단

가. F의 상속관계 및 원고의 상속지분에 관하여

민법 제997조에 의하면 '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다'고 규정하고 있고, 구 관습법 시행 당시에도 같다고 할 것이며, 여기서의 사망은 실제로 사망한 일자를 의미하고 공부상의 기재에 의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.

먼저, 이 사건에서 F과 그의 장남인 G의 각 사망일자 및 상속에 관하여 보건대, 갑 제2, 3호증, 을 제3호증의2의 각 기재에 의하면, F의 사망일자가 "1965. 12. 12."로, G의 사망일자가 "1972. 10. 12."로 각 제적등본에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나, F과 G가 실제로 사망한 일자는 "1948. 12. 12.(음력)"인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다. 따라서 F과 G의 각 사망으로 인한 상속은 "1948. 12. 12.(음력)"을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. 한편, 호주 F이 사망하였고, 그의 장남인 G가 아들 없이 사망하였으므로, 구 관습법상 F의 처 H가 사후양자의 선임이 있을 때까지 일시 호주 및 재산 상속을 하였다.

다음, H의 사망으로 인한 재산상속에 관하여 보건대, H는 사후 양자를 선임하지 않은 채 민법 시행 후인 1972. 3. 14. 사망한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다. H가 일시 호주상속 및 재산상속한 후,

사후 양자를 선임하지 않은 채 민법 시행 후에 사망하였고, 호주 및 재산상속은 신민법이 적용되어야 하므로, 기왕의 재산상속에 영향이 없다(그 가는 호주상속할 자가 없게 되어 무후가가 될 것이다). 결국 H의 사망으로 인하여 H의 자녀들이 재산상속을 하게 되고, H의 장남인 G의 딸인 원고는 대습상속을 하여 H의 상속인 중의 1인으로서, 일정 지분의 상속지분을 가지게 된다. 따라서 원고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H의 재산을 상속할 권리가 있다.

나. 이 사건 제1 등기의 추정력 번복에 관하여

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(1977. 12. 31. 법률 제3094호)에 의한 등기도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므로, 그 추정의 번복을 구하는 당사자가 그 등기의 기초가 된 위법 소정의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거나 위조되었다든지 그 밖의 사유로 적법하게 등기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주장·입증하여야 하고, 그 등기의 추정력을 번복하기 위한 입증의 정도는 등기의 기초가 된 보증서나 확인서의 실체적 기재 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되어야 하며, 그와 같은 입증이 없는 한 그 등기의 추정력은 번복되지 아니한다. 또한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(1977. 12. 31. 법률 제3094호)에 따라 등기를 마친 자가 보증서나 확인서에 기재된 취득원인이 사실과 다른 취득원인에 따라 권리를 취득하였음을 주장하는 때에는,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의 사유만으로 특별조치법에 따라 마쳐진 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된다고 볼 수는 없으며, 그 밖의 자료에 의하여 새로이 주장된 취득원인 사실에 관하여도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되어야 그 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된다(대법원 2005. 4. 29. 선고 2005다2189 판결 참조).

이 사건에서 보건대, 우선, 이 사건 제1 등기의 기초가 된 위법 소정의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거나 위조되었다든지 그 밖의 사유로 적법하게 등기된 것이 아니라는 점에 관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. 또한 이 사건 제1 등기에 관하여 새로이 주장된 취득원인인 "증여"에 관하여 H가 피고 C에게 증여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 관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그 주장이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,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.

따라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. 또한 피고 C의 이 사건 제1 등기가

원인무효임을 전제로 한 피고 D, E에 대한 주장도 역시 이유 없다.

4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방선옥

별지